의 안 번 호	제147호
의결 연월일	2022. 10. 18.

는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- 심 사 보 고 서 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0월 6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10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10월 18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O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고,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'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"20만원"에서 "30만원"으로 변경 (안 제4조 제2호)
- O 수급자격에 부합한 참전유공자에게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변경(안 제5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